

광주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가단51093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연

변 론 종 결 2022. 11. 17.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2020. 8. 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20. 8. 7. 접수 제144541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2020. 8. 12. 접수 제11223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C은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였고, 주식회사 D의 C에 대한 채권 및 부수권리 일체(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는 E 주식회사를 거쳐 2011. 6. 15. 원고에게 전전 양도되었으며, 각 양도사실은 채무자인 C에게 통지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2016. 5. 30.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5922828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5. 3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C)는 원고(이 사건 원고)에게 60,369,220원 및 그 중 13,857,579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6. 6. 23. 확정되었다.

다. C은 2020. 8. 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오빠인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20. 8. 7. 접수 제144541호로 지분이전등기를,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2020. 8. 12. 접수 제11223호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각 마쳐주었다(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 위 각 지분이전등기를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 한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은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 사건 부동산 중 1/6 지분은 C의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4762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라고 하는 이른바 '사해의사'라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수익자의 위와 같은 인식은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추정된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오빠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부동산은 망 F의 상속인들인 피고와 C의 상속재산이고, 망 F가 사망한 2002년경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이루어졌으나 등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던 중 2021년경 부득이 개별적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것인바, 위 상속재산분할협약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보다 이전에 성립하여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2) 판단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2002년경 성립된 상속재산분할협약에 해당한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근

별지